

세종자이e편한세상

예비입주자 공급안내문

세종자이e편한세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계약체결(동·호수 추첨) 전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서류를 확인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주대상자(예비당첨자)는 아래의 제출기한까지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서류를 미제출한 입주대상자(예비당첨자)는 동·호수 추첨 참가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일시의 추첨에 접수하지 않은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자이e편한세상 예비입주자 공급 일정 안내

구분	내용
예비입주자 서류 검사 일정	정당계약 일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SMS 통보 등)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서류를 미제출한 입주대상자(예비당첨자)는 동·호수 추첨 참가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공급(추첨)	
예비입주자 계약일시	
추첨 및 계약 장소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세종자이e편한세상 건본주택(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세종자이e편한세상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유의사항 안내

- 지정된 추첨 시간까지 참가(입실)하지 않을 시 동·호수 추첨 포기의사로 간주합니다.
-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추첨(배정) 할 경우 계약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동·호수 추첨 이후 지정된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의사로 간주하여 추첨된 동·호수의 모든 권리는 상실됩니다.
- 일반공급(가점제) 예비당첨자의 경우, 신청자격 검증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로 증명되는 가점이 차순위자의 가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예시) 예비당첨자 1번 ▶ 60점 / 예비당첨자 2번 ▶ 58점 = 예비당첨자 1번이 재산정한 가점 점수가 58점일 경우 부적격으로 추첨 불가
- 잔여세대수 보다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시는 예비당첨자 수가 많을 경우 후순번의 예비당첨자는 신청자격 검증(예비당첨자 서류접수 및 추첨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동·호수 추첨이 불가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세대 동·호수는 정당계약 이후 세종자이e편한세상 홈페이지 게시 예정입니다.
- 추첨 참여에 대한 의사판단은 예비당첨자 본인의 결정으로 예비순번에 의해 추첨참여가 불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세대는 추가적인 부적격세대에 의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잔여세대 배정 안내

- 이전기관 종사자
 - 동일한 공급유형의 당첨자 동·호수 중 계약포기 또는 부적격 세대
 - ※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③일반공급(가점제, 추첨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 동일한 공급유형의 당첨자 동·호수 중 계약포기 또는 부적격 세대
 - ※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③일반공급(가점제, 추첨제)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가점제, 추첨제) : 동일한 공급유형의 당첨자 동·호수 중 계약포기 또는 부적격 세대
 - ※ ①, ②의 예비당첨에게 공급하고 남은주택 전체 포함.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에 근거한 최초 예비입주자 선정

세종자이e편한세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당첨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의뢰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전 제출한 입주대상자(당첨자)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서류를 확인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입주대상자(당첨자)에 대하여 7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며, 소명기간 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8항에 따라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자로 전산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아래의 제출기한까지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05.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처리일 기준, 가옥대상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등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 필요함.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하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당첨자) 명단은 개별로 통보하지 않으며, 당첨자 발표 이후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자의 전화문의에는 개별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